

의안번호	2207763
의 퇴 인	최수진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2.
추계번호	24F049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
감면대상기관 추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, 감면대상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함에 따라 2026년 27억원, 2029년 125억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396억원(연평균 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3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대상기관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기관 추가(안 제45조의2)	-27	-121	-123	-125	-396	-99
－ 취득세	-4	-33	-33	-33	-103	-26
－ 재산세	-23	-88	-90	-92	-293	-7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 (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)	○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기관 추가 － 감면내용: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방과학연구소, 기초과학연구원, 정부출연연구기관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목적 부동산 － 감면대상 추가: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026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5조의2 (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국회에서 의결하여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 -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 - 단,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3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대상기관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동 제도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실적 조정
 - － 「지방세통계연감」에서 동 조항에 대해 세법개정 이전인 2023년까지의 실적이 가용함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화를 반영할 필요
 - － 2024년 신규 추가된 감면대상(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방과학연구소 등)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(2021~2023년)과 세법개정 전후의 감면율(85%¹⁾→50%) 비율을 활용하여 현행 감면대상 및 감면율 기준으로 실적 조정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2021~2023년간 조정실적 중 특이치를 제외한 연

1) 동 조문은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면제이나 동법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85% 감면율만 적용

평균 수준에서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의 인상을 반영하여 발생한다고 가정
-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액 급증 효과는 배제하고 연평균 감면액 산출
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2023년 조정실적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 개요) 동 제도는 기초과학연구 등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

- 동 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
 - 본 조문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, 기존 85%였던 감면율이 50%로 축소
 - 감면대상 확대: (2023년 이전)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기초과학연구원 → (2024년 추가) 국방과학연구소, 정부출연연구기관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
 - 감면율 축소: (2023년 이전) 85%* → (현행) 50%
- * 동 조문은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면제이나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85% 감면율만 적용
- 개정안은 현행 감면대상을 유지하면서, 감면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 포함
 - 감면적용 대상기관: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연구재단 등 특정연구기관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[표 2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요 연혁

	2023년 이전	2024년 이후(현행)	개정안
감면대상	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- 기초과학연구원 (신규 추가)	(좌 동) - 국방과학연구소 - 한국국방연구원 - 한국해양과학기술원 - 정부출연연구기관	(좌 동) - 특정연구기관 추가
감면율	면제(85%) - 최저납부세제 적용으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만 적용	50%	(좌 동)
적용기한	2023.12.31.	2026.12.31.	2029.12.31.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감면실적)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217억, 2023년 100억원 수준

- 2021년,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급증
 -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8개동 시설 취득으로 인한 감면: 88.2억원
- 동 감면실적은 2023년의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변동되기 이전의 실적
 - 국방과학연구소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 감면대상은 2024년부터 감면 적용되었으며, 감면율도 기존 85%에서 50%로 축소

[표 3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계	217	91	100
- 취득세	159 ¹⁾	24	42
- 재산세	58	67	58

주: 1)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취득세 감면액 급증
 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 조정) 2021~2023년간 감면실적을 현행 감면대상과 감면율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, 현행 기준 동 조항의 감면실적은 2023년 90억 수준

○ 2021~2023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,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존 감면대상의 감면실적과 동 기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신규 감면대상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에 2023년 세법개정 전후의 감면율 변화를 비율로써 반영

- 기존 감면대상의 경우 2021~2023년간 실적의 감면율이 85%, 현행 감면율이 50%임을 고려하여 감면율의 변화를 비율(50/85)로써 반영하여 실적 조정
- 신규 감면대상의 경우 2021~2023년간 납부실적에 현행 감면율을 곱하여 실적 조정

[표 4]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의 조정내역
(단위: 억원)

			2021	2022	2023
기존 감면 대상	조정 전	－ 취득세(A)	159	24	42
		－ 재산세(B)	58	67	58
	조정 후	－ 취득세(C=A×50/85)	94	14	25
		－ 재산세(D=B×50/85)	34	39	34
신규 감면 대상	조정 전 (납부실적)	－ 취득세(E)	30	23	15
		－ 재산세(F)	45	51	48
	조정 후	－ 취득세(G=A×50/100)	15	12	8
		－ 재산세(H=B×50/100)	23	26	24
조정 후 실적		계(I+J)	165	91	90
		－ 취득세(I=C+G)	108	26	32
		－ 재산세(J=D+H)	56	65	58

주: 1. 기존감면대상: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기초과학연구원
신규감면대상: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정부출연연구기관
자료: (기존감면대상 감면실적)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;
(신규감면대상 납부실적)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 기관 제출자료

□ (특정연구기관 납부실적) 특정연구기관의 2021~2023년도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은 2021년 42억원, 2023년 44억원 수준

○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(出捐)하는 연구기관

－ 특정연구기관(16개):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의학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기초과학연구원

○ 일부 특정연구기관은 동법 제41조, 제37조, 제45조의2, 제78조, 제79조, 제81조 등 적용으로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²⁾

－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감면 (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면제)

－ 한국원자력의학원: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(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)

－ 기초과학연구원: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(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감면)

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: 취득세 및 재산세 75% 감면 (제78조 산업단지등 감면)

－ 그 외 일부 기관: 취득세 및 재산세 50% 또는 100% 감면 (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,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)

○ 개정안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에 50% 감면을 적용하여 향후 감면 실적 추계

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³⁾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납부액에 50% 감면을 적용

－ 재산세 감면기한 적용을 받는 제79조(최대 8년) 및 제81조(최대 5년)⁴⁾는 감면액 미고려, 납부실적으로 포함

－ 그 외 현재 다른 조문으로 감면 혜택 중인 기관의 산출액은 제외하여 추계

2) 특정연구기관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및 감면내용은 각 기관별 제출자료에 근거

3)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으로 취득세 감면(75%) 실적은 있으나 재산세 감면실적 없음

4) 제79조는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,

제81조는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100% 감면

[표 5] 개정안 적용 대상인 특정연구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	2021	2022	2023
특정연구기관	계	42	61	44
	- 취득세	3	16	0
	- 재산세	39	45	44

주: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재산세)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액
자료: 특정연구기관 각 기관별 제출자료

- 현행 감면대상과 감면을 기준으로 조정한 감면실적 및 특정연구기관의 감면액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정치는 2023년 112억 원 수준
- 특정연구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에 감면을 50%를 적용 시 감면액은 2021년 21억 원, 2023년 22억 원 수준

[표 6] 특정연구기관 포함 지방세 감면실적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1	2022	2023
현재 기준 조정 후 실적	계	165	91	90
	- 취득세	108	26	32
	- 재산세	56	65	58
특정연구기관 감면액 추정	계	21	30	22
	- 취득세	1	8	0
	- 재산세	20	22	22
감면액 합산	계	186	121	112
	- 취득세	110	34	32
	- 재산세	76	87	80

주: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50% 적용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; (신규감면대상 납부실적) 특정연구기관 각 기관별 제출자료

- (세수효과 추계)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 중 특이치인 2021년을 제외한 감면추정치의 연평균 수준,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 중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한 연평균 수준으로 추정
 - －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2026년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액 4억원만 반영하며, 2027~2029년은 33억원 수준으로 추정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증가율(2.4%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2026년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액 23억원만 반영하며, 2027~2029년은 연평균 증가율 2.4%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 추계: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	현행(A)	29					
	개정안(B)	33	33	33	33	103	26
	세수효과(A-B)	-4	-33	-33	-33	-103	-26
재산세	현행(A)	62	-	-	-	-	-
	개정안(B)	86	88	90	92	293	73
	세수효과(A-B)	-23	-88	-90	-92	-293	-73

(3) 추계결과

-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, 감면대상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함에 따라 2026년 27억원, 2029년 125억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396억원(연평균 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(2026.12.31.)을 고려하여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3년간 발생하며, 2026년에는 감면대상기관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기관 추가(안 제45조의2)	-27	-121	-123	-125	-396	-99
－ 취득세	-4	-33	-33	-33	-103	-26
－ 재산세	-23	-88	-90	-92	-293	-73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